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업장가입자 가입연령 상한 연장〉

■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181호)

2025.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사업장가입자 가입연령 상한 연장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검토의견	4
다. 관계 기관 의견	10

I. 개요

1.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18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민규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5. 2. 14.

(3) 회 부 일 : 2025. 2.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24년말 기준 666만 2천명에 이를 정도로 고령자의 경제활동은 매우 활발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가입연령 상한은 59세까지로, 이들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이에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연금개시 연령에 이르기까지 가입기간의 상한을 연장하여 근로자가 보다 긴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하여 노후 안정에 기여하고, 고령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사업장가입자 가입연령 상한 연장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행 59세인 사업장가입자 가입연령 상한을 64세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1. ~ 3. (생략) 4. <u>60세</u> 가 된 때 5. (생략) ②·③ (생략)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①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65세</u>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u>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u> 로서 60세가 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① ----- ----- ----- ----- -----. ----- -----. 1. <u>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u> -----.

현행	개정안
는 제외한다. 가. ~ 다. (생략) 2. (생략) ②·③ (생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1965년까지의 출생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1966년부터 1968년까지의 출생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가입 상한 연령에 1세를 뺀 연령을 적용한다. 제3조(1966년부터 1968년까지의 출생자의 임의계속가입에 관한 특례)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66년부터 1968년까지의 출생자인 사업장가입자로서 64세가 된 자는 제6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검토의견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됨.¹⁾
- 한편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사람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당연 적용사업장’에 속한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한 경우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되는데,²⁾

1)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8조(가입 대상 제외자) 법 제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 직종 근로자
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제외한다.

2)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 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2011. 6. 7.>

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지역가입자)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다. 삭제 <2016. 5. 29.>
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내 거주 국민으로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이기는 하지만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사람
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으며,³⁾

이들이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게 되
더라도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
속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음.⁴⁾

- 참고로, 근로자인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연금보
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준소득월액의 4.5%씩을 부담하고, 지
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전액인 기준
소득월액의 9%를 가입자 본인이 납부하여야 함.⁵⁾

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
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
급여 수급자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이 경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연금법」

제10조(임의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4)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 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 다. 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2.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근로자로 국민연계에 가입하
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
 - 가. 제61조제1항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 나.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을 부칙 제5조에 따라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5)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

□ 개정안은 사업장가입자 가입연령 상한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함으로써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참고로,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는 총 486,273명으로, 60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약 418만명⁶⁾)의 약 11.6%가 임의계속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개정안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가입연령 상한이 5세 연장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근로자가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임의계속가입자가 아닌 사업장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의 반액만 납부하면 되므로 이들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현행법의 체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연령’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과 비대상을 먼저 구분한 다음, 그 가입 유형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로 구분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사업장가입자에 대하여만 가입연령 상한을 5세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예컨대, 그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60세 이

다.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6) 통계청, 「2024년 10월 고용동향」, 2024. 11. 13.

상이 되어 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가 된 경우에도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당연히 부여할 것인지, 이미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⁷⁾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⁸⁾받았거나 같은 법 제61조제2항⁹⁾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라 하더라도 당연적용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라면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할 것인지 등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가입 대상의 연령 상한을 59세로 규정한 현행법 체계에 개정안이 미칠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또한, 개정안은 제12조제1항제4호에서만 “60세”를 “65세”로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현행법 제6조 본문 및 제8조제1항 본문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임.¹⁰⁾

□ 둘째,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기존에 임의계속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개정안에 따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될 때 연금보험

7)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8)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3(반환일시금의 지급연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60세가 된 때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9)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0)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¹⁾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각 호 생략)

료 부담이 경감되는 측면이 있지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당연적용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연금보험료의 반액을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면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개정안에 대한 수용성이 높지 아니할 수도 있는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될 경우 그의 연금보험료 반액은 그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이들의 고용 여건·처우 및 해당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집단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셋째, 사업장가입자(18세 이상 60세 미만)와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의 가입 대상이 상호 중첩되지 아니하여 양자를 분리하여 규정할 실익이 없었던 현행법과 달리,

안 제13조제1항제1호는 사업장가입자의 가입연령 상한을 연장하면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업장가입자’의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의 입법례¹¹⁾를 참고하여 임의계속가입자

11) 「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각 호 생략)

제10조(임의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4.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③ 임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6호

의 대상에서 사업장가입자가 원천적으로 배제되도록 하여 명확성을 높이고,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의 가입자 자격 변동(예: 사업장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이 잦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의 상실 요건¹²⁾을 함께 정비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넷째, 안 부칙 제2조제2항은 1966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의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4세’인 점¹³⁾을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안 제12조제1항제4호의 ‘65세’는 현행법의 다른 조문과 연계하여 볼 때 ‘가입 상한 연령’을 의미한다고 간접적으로만 해석될 수 있고, ‘가입 상한 연령’은 현행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966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의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64세가 된 때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와 제7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6.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12)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③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 탈퇴 신청이 수리된 날보다 같거나 빠르고 임의계속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2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13)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48조제1항제3호, 제56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3항 각 호·같은 조 제4항 각 호,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제58조제2항,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제5호 단서, 제6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와 이 법 제66조 및 제7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정년연장 논의, 고령자 고용 여건, 노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선행할 필요가 있고,

당연가입 대상을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규정한 현행법 체계와 가입자 종별 당연가입 연령 상한이 서로 달라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10